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8 제2호가목1)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다만, 장애아 입소 등”으로 하고, 같은 목2)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2)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,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. 다만,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.

별표 8의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 연장형 보육) 및 시간제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8]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가. 반 운영 1)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한다. 다만,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. 2)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,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. 다만,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<u>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.</u> 3) (생략)	[별표8]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가. 반 운영 1) ----- ----- 다만, <u>장애아 입소 등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</u>----- ----- -----. 2)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.</u> 3) (현행과 같음)
[별표8의2]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가. ~ 라. (생략) 마. 제28조 각 호의 <u>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</u>	[별표8의2]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-----<u>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 연</u>

<u>연장형 보육) 중 2가지 이상을</u>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 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바. ~ 아. (생 략)	<u>장형 보육) 및 시간제보육 중 2</u> <u>가지 이상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바. ~ 아.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7228, 7212